

의안번호	제 351 호
의결년월일	1996. 5. 28. (제 44 회)

의결사항	원안가결
------	------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6. 4. 27.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 (안)

의안번호 351

제출년월일 : 1996. 4. 27

제 출 자 : 고성군수

1. 제안사유

지방세법제238조및 고성군세조례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고시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도시계획명	읍 면	면적(km ²)	대 상 지 역	비 고
계	4	19.45	13개리	
고성읍 도시 계획 구역	1	14.28	10개리	
	고성읍	14.28	○ 성내리, 서외리, 동외리, 송학리, 수남리, 기월리, 교사리 전지역 ○ 신월리, 울대리, 월평리 일부지역	
배둔도 도시 계획 구역	2	0.88	2개리	
	회화면	0.78	○ 배둔리 일부지역	
	마암면	0.10	○ 화산리 일부지역	
삼천포 도시 계획 구역	1	4.29	1개리	
	하이면	4.29	○ 덕호리 일부지역	

○ 도시계획세 적용

- 과세대상 :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및 건축물
- 과세표준
 - 건축물 : 과세기준일(매년 5.1) 현재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토 지 : 과세기준일(매년 5.1) 현재 토지의 시가표준액
- 세 율 : 1,000분의 2 (표준세율)
- 납세기준및 납기 : 종합토지세및 재산세와 동일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고시

고성군 고시제 호

지방세법 제238조 및 고성군세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의회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월 일

고 성 군 수

1. 사유 :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적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제4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결을 얻어 도시계획세의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함.
2. 부과지역 고시 내역
 -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지역안의 토지및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고성읍, 배둔, 하이면 덕호리 발전소지역의 삼천포 도시계획 지적고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였습.
3. 부과대상지역 열람
 - 부과대상지역 : 따로붙임
 - 부과지역현황은 군청재무과 및 해당읍면 재무계 별도보관하고 군청및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시계획세부과고시지역

도시계획명	읍 면	면적(km ²)	대 상 지 역	비 고
계	4	19.45	13개리	
고성읍 도시 계획 구역	1	14.28	10개리	
	고성읍	14.28	○ 성내리, 서외리, 동외리, 송학리, 수남리, 기월리, 교사리 전지역 ○ 신월리, 울대리, 월평리 일부지역	
배둔 도시 계획 구역	2	0.88	2개리	
	회화면	0.78	○ 배둔리 일부지역	
	마암면	0.10	○ 화산리 일부지역	
삼천포 도시 계획 구역	1	4.29	1개리	
	하이면	4.29	○ 덕호리 일부지역	